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1999. 5.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二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二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종전 사업기준일부터 5년이내 전액감면,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던 것을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앞으로는 사업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이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천시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형	개	정	안
<신 설>				<p>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p> <p>이천시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